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834호 2011. 6. 14(화)

포항시보

◀ 조 려 ▶

-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46호) 2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47호) 13

◀ 입법예고 ▶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제2011-550호)..... 17
-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1-555호) 26
-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1-560호)..... 33
-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제2011-561호) 38

◀ 고 시 ▶

-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제2011-50호) 42

◀ 공 고 ▶

-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포항시의회공고 제5호) 64

회 람									
--------	--	--	--	--	--	--	--	--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6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1046호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장급(4급 공무원)” 을 “4급 공무원”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 을 “납세의무 성립일” 로 하며, 같

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 본문 중 “제1호 내지 제5호” 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을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90조” 를 “제88조” 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3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지방세법」” 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한다.

②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 중 “「지방세법」” 을 “「지방세 기본법」” 으로 한다.

③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지방세법」” 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한다.

④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방세법」 제64조” 를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 로 한다.

⑤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지방세법」 제27조” 를 “「지방세 기본법」 제59조와 제60조” 로 한다.

⑥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을 “「지방세 기본법」” 으로 한다.

⑦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 를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부터 제127조” 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지방세법」” 을 “「지방세 기본법」” 으로 한다.

■ 포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원)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상금	비 고
		합 계	본 세	가산금		
계						
과년도 미수액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징수촉탁	교부금수입					
숨은세원 발 굴	미 등 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대					

위의 포상금을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과년도 미수액(징수촉탁교부금) 징수(수입)내역서」 또는 「숨은 세원 발굴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민간인의 경우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동장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1. ~ 3. (생 략) <u><신 설></u></p> <p>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생 략)</p> <p>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조(지급기준) ① (생 략) 1. ~ 4. (생 략) 5. <u>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u> 6.(생 략) <u><신 설></u></p>	<p>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u>4급 공무원</u> ----- ----- ----- ----- -----</p> <p>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납세의무 성립일</u>----- ----- ----- ----- 6.(현행과 같음)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p>

현 행	개 정
<p>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p> <p>1. ~ 2.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의 100분의10</p> <p>제4조(지급한도) -----제1호부 터 제5호까지----- ----- ----- 1. ~ 2.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공적심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p> <p>③ ~ ⑤ (생 략)</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 -----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② ----- 1명을 포 함한 위원 5명-----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급)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8조(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88조 ----- ----- -----</p>
<p>제9조(환수)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9조(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지방 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 -----</p>

1. 개정이유

-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타 지역 차량에 대한 체납세 강제징수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 구 「지방세법」 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및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 지급대상: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 ※ 징수촉탁교부금 :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로 해당 자치단체에 송금한 징수액의 30퍼센트
- 나.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3조제1항제7호)
 - 위탁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 ※ 2010년 징수촉탁교부금 수입: 34백만원
- 다.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3항)
- 라.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지급명령에 근거 하므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제3항)
- 마. 행정안전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2010.8.4)으로 개정된 서식설계 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안 별지 서식)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6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1047호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22조의2제1항의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세액공제 순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2. 1장의 고지서에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부가되는 세목의 세액을 우선 공제한다.

제12조 제목 및 본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를 “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을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신 설〉</p> <p>제1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 <u>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u>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경상북도 <u>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u>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p> <p>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경상북도도세 감면조례」 제22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p> <p>② 제1항의 세액공제 순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 <p>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경상북도도세 감면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p> <p>2. 1장의 고지서에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부가되는 세목의 세액을 우선 공제한다.</p> <p>제12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 ----- -----<u>경제진흥원</u>----- ----- -----<u>경제진흥원</u>----- ----- -----.</p> <p>제18조(감면 제외대상) -----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p>

1. 개정이유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 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비용 절감에 따라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 대상자: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자

2) 공제액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동시 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3) 공제순위: 1장의 고지서에

- 도세와 시세가 병기된 경우 도세 우선 공제
-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 부가세목 우선공제

※ 2010년 : 25,329건(자동이체 25,196 전자송달 133)

나.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변경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 법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변경

※ 법 제13조제5항: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 증과세 대상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1 - 550호

포항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6. 9.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공동주택내 분쟁을 조정 및 해소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 다. 위원회의 임기(안 제5조)
- 라. 분쟁의 조정신청 등(안 제12조)

- 마. 조정의 효력(안 제14조)
- 바. 조정의 거부 및 종결(안 제15조)
- 사. 비용부담(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건축과, 주소: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3583, FAX 270-3580, E-mail : jcl8105@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1부. 끝.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②제1항에서 사용한 용어는 법 제2조에서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구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포항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는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6. 공동주택관리업무관련 국장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택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 5. 의결사항
-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분쟁의 조정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5.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그 집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2.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 때
-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대리인) 제2조에 따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동주택 전체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서
-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해당 안건이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59조에 의하여 행정지도 또는 행정 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 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참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 의 효력) ① 제12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외의 거부 및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외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조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 공고 제2011-555호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시 외국인주민은 5,542명(2009. 12월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포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외국인주민 정의(안 제2조)
- 외국인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외국인주민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세계인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포상 및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제19조)

3. 관련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국제협력팀장, 주소: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3714, FAX 270-3719, E-mail : k5astro@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2. “외국인주민”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등을 말함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함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3.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4.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 5.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제8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포항시외국인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안정

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가.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 나. 대학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및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외국인주민자문회의” (이하 “자문회의” 라 한다)를 둘 수 있

다.

-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회의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1.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포항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및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포항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포항시 공고 제2011-560호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6. 13.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속박물관 위치를 토지의 지번에서 새주소(도로명주소)로 하고, 박물관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이 박물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위치를 새 도로명 주소지로 수정
 홍해읍 성내리 32번지 ⇒ 홍해읍 한동로 51(안 제2조)
- 나.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박물관을 담당하는 문화예술 과장을 박물관장으로 하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1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7.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272, FAX 270-2270, E-mail : ig292@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홍해읍 성내리 32번지” 를 “홍해읍 한동로 51” 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박물관의 관장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리원) 시장은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중 “자” 를 “사람” 으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위치) 박물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2번지에 둔다.</p>	<p>제2조(위치)-----흥해읍 한동로 51-----</p>
<p>제3조(업무) (생략) 1. ~ 2. (생략) 3.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p>	<p>제3조(업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p>
<p>제4조(박물관장) ①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p>	<p>제4조(박물관장) ① 박물관 관장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p> <p>②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p>
<p>제5조(관리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에 의한다.</p>	<p>제5조(관리원) 시장은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p>
<p>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p>	<p>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p>
<p>제8조(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8조(관람 제한) ----- -----사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음주 기타 박물관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사람 2. --- <u>그 밖에</u> ----- -----사람 3. <u>그 밖에</u> ----- -----사람
---	---

포항시 공고 제2011-561호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6. 13.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시(’09.4.14) 관람료를 폐지(무료관람)함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 관람료 등 제반규정이 불필요함으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관련법령

-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4. 폐지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7. 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272, FAX 270-2270, E-mail : ig292@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조례 제8조에 의한 관람료는 시세외수입으로 한다.

제3조(관람권)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한 관람권은 시에서 제작 검인하여 박물관장에게 인계한다.

제4조(관람료 징수) ①박물관장은 별지 1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출납부를 비치 관리한다.

②박물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일일징수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한다.

③박물관장은 흥해읍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예금 계좌를 설치하고 일일 징수금액을 익일 10:00까지 예금하여야 한다.

④박물관장은 월징수금액을 익월 3월까지 포항시 세입징수관 계좌로 불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수 실적을 예금잔고증명 1부 첨부하여 월보로 제출한다.

제5조(관리원의 복장) 박물관 관리원의 복장은 다음과 같이 착용한다.

- 1. 하절기 : 흰색 남방에 흑, 곤색 하의
- 2. 동절기 : (별첨1)의 지정된 제복 착용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1-50호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6. 8 .

1. 사업의 명칭 :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양질의 택지 공급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시에 인근지역과 균형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8-9번지 일원
 - 면 적 : 907,540m²
4.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 5. 시행기간 : 2011.06.08 ~ 2016.06.08
-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 붙임
- 8.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인가로부터 20일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3)
- 9.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초곡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8-9번지 일원	907,540	-	907,540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200)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1.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1-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07,540	-	907,540	100.0	
주거 지역	소계	801,560	-	801,560	88.3	
	제1종일반주거지역	368,871	-	368,871	40.6	
	제2종일반주거지역	69,075	-	69,075	7.6	
	제3종일반주거지역	363,614	-	363,614	40.1	
준주거지역		47,919	-	47,919	5.3	
자연녹지지역		58,061	-	58,061	6.4	

1-1-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1-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2-1. 교통시설

1-2-1-1. 도로

① 도로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96	39,512 (15,697)	1,025,195 (215,701)	20	23,923 (4,753)	741,631 (70,681)	66	15,176 (10,531)	279,719 (141,175)	10	413	3,845	
일 반 도 로	대로	5	26,182 (2,367)	882,454 (72,960)	1	19,170 (-)	671,192 (242)	4	7,012 (2,367)	211,262 (72,718)	-	-	-
	중로	7	2,641	50,576	4	2,219	44,857	2	189	2,897	1	233	2,822
	소로	75	10,509	91,142	15	2,534	25,582	60	7,975	65,560	-	-	-
보행자 도 로	소로	9	180	1,023	-	-	-	-	-	-	9	180	1,023

주 : ()는 사업구역내 구간 연장·면적임

②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19,170	유강동 구역계	홍해 곡강리 구역계	일 반 도 로	국도 7호선	1967. 5. 24 건고 제380호	
기정	대로	2	26	30	주간선 도로	855	대로1-6 산29-41입	대로2-31 산35-3입	일 반 도 로		2001.9.25 경북고시 제01-288호	
기정	대로	2	31	30	주간선 도 로	5,500 (855)	대로1-1 산37-1목	매산리구역 계	일 반 도 로		2001.9.25 경북고시 제01-288호	
기정	대로	2	신1	30	주간선 도 로	353	대로2-26 산38-100 입	중로1-신4 산38-9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대로	2	신2	30	주간선 도 로	304	중로1-신3 산38-40 입	대로2-26 산38-100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소계				5개 노선		26,182 (2,367)	()는 사업구역 내 연장					
기정	중로	1	신1	20	보 조 간 선 도 로	474	대로 2-26 산38-96 입	대로 2-31 998 천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중로	1	신2	20	보 조 간 선 도 로	304	중로 1-신3 130-4 답	대로 2-26 산38-96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중로	1	신3	20	보 조 간 선 도 로	915	대로 1-6 산38-74 입	중로 1-신4 14 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중로	1	신4	20	보 조 간 선 도 로	526	지구경계 산188 구	대로 2-31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소계				4개 노선		2,219						
기정	중로	2	신1	15	집 산 도 로	118	경관녹지 신3 산38-129입	중로 1-신3 산38-129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중로	2	신2	15	집 산 도 로	71	지구경계 산38-40입	중로 1-신3 산38-40입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소계				2개 노선		189						
기정	중로	3	신1	12	집 산 도 로	233	소로 1-신6 42-1 답	중로 1-신4 산38-44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소계				1개 노선		233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신1	10	국 지 도 로	189	소로 2-신9 산38-82 입	소로 2-신1 1006 천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1	신2	10	국 지 도 로	243	소로 1-신1 산38-82 입	중로 2-신1 산38-129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1	신4	10	국 지 도 로	210	대로 2-신1 산38-9 입	소로 2-신31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1	신5	10	국 지 도 로	167	대로 2-신1 산38-77 입	소로 2-신31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1	신6	10	국 지 도 로	304	중로 1-신3 44 답	대로 2-신1 산38-62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1	신7	10	보 조 간 선 도 로	169	중로 3-신1 산38-44 입	대로 2-신1 산38-7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1	신8	10	보 조 간 선 도 로	277	중로 1-신4 산38-9 입	소로 2-신37 산37-1 목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1	신9	10	보 조 간 선 도 로	237	중로 1-신4 7 답	소로 2-신37 산37-1 목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1	신10	10	보 조 간 선 도 로	179	중로 1-신4 산38-44 입	소로 2-신37 9-5 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1	신11	10	보 조 간 선 도 로	16	소로 2-신2 150답	지구경계 150답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1	신12	10	보 조 간 선 도 로	184	저류지 1 36답	중로 1-신3 산38-40 입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1	신13	10	보 조 간 선 도 로	136	소로 1-신6 산36묘	소로 1-신7 산38-56 입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1	신14	10	보 조 간 선 도 로	87	소로 1-신7 산38-56입	중로 1-신4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1	신15	10	보 조 간 선 도 로	68	소로 2-신61 39-2 입	중로 1-신3 산38-40 입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1	신16	10	보 조 간 선 도 로	68	소로 2-신61 39-2 입	중로 1-신3 산188 구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소 계			15개 노선		2,534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신1	8	국 지 도 로	87	소로 2-신2 산44-3 입	소로 2-신2 1006 천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	8	국 지 도 로	471	소로 2-신1 산44-3입	완충녹지 56 1006천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3	8	국 지 도 로	75	소로 2-신2 156답	소로 2-신2 156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	8	국 지 도 로	69	소로 2-신2 153-1답	소로2-신2 154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5	8	국 지 도 로	77	소로 2-신2 151답	소로 2-신2 1006천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6	8	국 지 도 로	226	소로 1-신1 142답	소로 1-신2 산 38-133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7	8	국 지 도 로	87	소로 2-신6 산38-33 입	소로 2-신8 산38-33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8	8	국 지 도 로	74	소로 1-신1 산38-133입	소로 2-신6 산38-33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9	8	국 지 도 로	71	소로 2-신53 산38-131입	소로 1-신1 산38-82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10	8	국 지 도 로	110	소로 2-신13 산38-136 입	중로 2-신1 산38-12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11	8	국 지 도 로	110	소로 2-신13 산38-136입	중로 2-신1 산38-12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12	8	국 지 도 로	71	소로 1-신2 산38-83입	소로 2-신53 산38-138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13	8	국 지 도 로	197	소로 1-신2 산38-83 입	중로 1-신3 산38-136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14	8	국 지 도 로	147	중로 2-신1 산38-129 입	소로 1-신12 산38-40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15	8	국 지 도 로	56	소로 2-신17 132-2 답	소로 2-신14 132-1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16	8	국 지 도 로	56	소로 2-신17 133 답	소로 2-신14 산38-40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신17	8	국 지 도 로	147	중로 2-신1 산38-129 입	소로 1-신12 산38-40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18	8	국 지 도 로	144	소로 2-신17 133 답	소로 1-신12 36 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19	8	국 지 도 로	176	소로 1-신12 산182 구	지구경계 25-1 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0	8	국 지 도 로	240	소로 2-신19 25-1 답	소로 2-신19 26-3 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1	8	국 지 도 로	104	소로 1-신12 산38-40 입	중로 2-신2 산38-40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2	8	국 지 도 로	104	소로 1-신12 산38-40 입	중로 2-신2 산38-40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3	8	국 지 도 로	80	소로 1-신12 산38-40 입	소로 2-신22 산38-40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4	8	국 지 도 로	75	소로 2-신31 산33-2 목	소로 1-신4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5	8	국 지 도 로	88	소로 2-신26 산38-9 입	소로 2-신24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6	8	국 지 도 로	82	소로 2-신31 산38-9 입	소로 1-신4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7	8	국 지 도 로	149	소로 2-신28 산38-106 입	소로 2-신31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8	8	국 지 도 로	88	소로 1-신4 산38-9 입	소로 1-신5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29	8	국 지 도 로	107	소로 2-신30 산38-110 입	소로 2-신31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30	8	국 지 도 로	135	소로 1-신5 산38-9 입	중로 1-신4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31	8	국 지 도 로	595	대로 2-신1 산38-9 입	소로 2-신30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34	8	국 지 도 로	125	중로 3-신1 산38-101 입	소로 1-신13 산38-61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신35	8	국 지 도 로	125	중로 3-신1 산38-101 입	소로 1-신13 산38-29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36	8	국 지 도 로	125	중로 3-신1 산38-44 입	소로 1-신14 산38-56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37	8	국 지 도 로	639	소로 1-신8 산37-1 목	소로 1-신10 9-5 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38	8	국 지 도 로	67	소로 1-신8 산37-1 목	소로 2-신37 산37-1 목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39	8	국 지 도 로	45	소로 1-신8 6-4 전	소로 2-신37 산37-1 목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0	8	국 지 도 로	124	소로 1-신9 산185 도	소로 1-신8 6-9 전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1	8	국 지 도 로	124	소로 1-신9 8-1 답	중로 1-신8 산37-1 목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2	8	국 지 도 로	124	소로 1-신9 8-6 대	소로 1-신8 6-1 전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3	8	국 지 도 로	124	소로 1-신9 산37-1 목	소로 1-신8 6-5 전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4	8	국 지 도 로	102	소로 2-신43 산37-8 입	소로 2-신37 3-2 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5	8	국 지 도 로	85	소로 2-신43 6-2 전	소로 2-신37 산37-1 목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6	8	국 지 도 로	114	소로 1-신10 12 답	소로 1-신9 산38-44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7	8	국 지 도 로	114	소로 1-신10 산186 구	소로 1-신9 8-1 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8	8	국 지 도 로	114	소로 1-신10 산38-6 입	소로 1-신9 8-6 대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49	8	국 지 도 로	82	소로 2-신48 8-7 답	소로 2-신37 8-5 대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50	8	국 지 도 로	61	소로 2-신48 8-6 대	소로 2-신37 9-14 답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신51	8	국 지 도 로	83	소로 2-신52 산188 구	소로 1-신10 산38-44 입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52	8	국 지 도 로	157	중로 1-신4 산188 구	소로 1-신10 11-3 잡	일 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2	신53	8	국 지 도 로	106	완충녹지 56 산38-72 입	소로 2-신13 산38-121 입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2	신54	8	국 지 도 로	73	소로 1-신2 산38-126 입	소로 2-신11 산38-126 입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2	신55	8	국 지 도 로	56	소로 2-신17 산38-129 입	소로 2-신14 산180구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2	신56	8	국 지 도 로	80	소로 2-신18 36 답	소로 2-신17 133답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2	신57	8	국 지 도 로	117	중로 2-신2 산38-40 입	소로 1-신15 산39-2 입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2	신58	8	국 지 도 로	89	소로 2-신24 산38-9 입	소로 2-신31 산38-9 입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2	신59	8	국 지 도 로	55	소로 1-신8 6-1 전	소로 2-신37 산37-1 목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2	신60	8	국 지 도 로	114	소로 1-신15 39-2 입	소로 1-신16 40 답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2	신61	8	국 지 도 로	344	지구경계 39-2 입	소로 2-신62 14 답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2	신62	8	국 지 도 로	109	중로 1-신4 14 답	소로 1-신16 40 답	일 반 도 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소계			60개 노선			7,975						
기정	소로	3	신1	6	보행자 전 용 도 로	20	대로 1-6 산38-81 입	소로 1-신1 산38-82 입	특 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3	신3	5	보행자 전 용 도 로	20	대로 2-26 산33-2 목	소로 2-신31 산33-2 목	특 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3	신4	6	보행자 전 용 도 로	20	대로 2-31 산38-9 입	소로 2-신31 산38-9 입	특 수 도 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신5	6	보행자 전용도로	20	대로 2-31 산38-9 입	소로 2-신31 산38-9 입	특수도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3	신6	6	보행자 전용도로	20	대로 2-31 산38-9 입	소로 2-신37 산38-9 입	특수도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3	신7	5	보행자 전용도로	20	대로2-31 산37-1 목	소로 2-신37 산37-1 목	특수도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3	신10	5	보행자 전용도로	16	대로 1-1 9-9도	소로 1-신10 9-5답	특수도로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소로	3	신12	6	보행자 전용도로	24	중로 1-신3 산38-40 입	소로 2-신14 132-1 답	특수도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소로	3	신13	6	보행자 전용도로	20	대로 2-31 산38-53 입	소로 2-신31 산38-9 입	특수도로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소계			9개 노선			180						

1-2-1-2.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 면 시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5,836	-	5,836	-	
기정	주1	노외 주차장	초곡리 산38-11 입 일원	1,663	-	1,663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주2	노외 주차장	초곡리 산38-62 입 일원	2,591	-	2,591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주3	노외 주차장	초곡리 산38-40 입 일원	1,582	-	1,582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1-2-2. 공간시설

1-2-2-1. 공원

①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51,313	-	51,313	-	
기정	근1	공원	근린공원	초곡리 산38-101 임 일원	31,486	-	31,486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근2	공원	근린공원	초곡리 산31-8 임 일원	13,984	-	13,984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어1	공원	어린이 공원	초곡리 산38-128 임 일원	2,670	-	2,670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어2	공원	어린이 공원	초곡리 8-6 대 일원	1,508	-	1,508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어3	공원	어린이 공원	초곡리 산38-9 임 일원	1,665	-	1,665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1-2-2-2. 녹지

①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48,795 (47,235)	-	48,795 (47,235)	-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성곡교마무리골 ~ 베다니아 뒷슬골	40,686 (39,126)	-	40,686 (39,126)	2001.9.25 경북고시 제01-288호	
기정	신1	녹지	경관녹지	초곡리 150답 일원	1,489	-	1,489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신2	녹지	경관녹지	초곡리 1006천 일원	748	-	748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신3	녹지	경관녹지	초곡리 산38-33임 일원	3,682	-	3,682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신5	녹지	경관녹지	초곡리 산188-1구 일원	1,488	-	1,488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신6	녹지	경관녹지	초곡리 21-5답 일원	550	-	550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신7	녹지	경관녹지	초곡리 40-2답 일원	115	-	115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기정	신8	녹지	경관녹지	초곡리 산188구 일원	37	-	37	2011.2.15 포항시고시 제2011-9호	

주 : ()는 사업구역내 시설면적임

1-2-2-3. 광장

①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53,041 (171)	-	53,041 (171)	-	
기정	16	광장	교통광장	초곡리 779-6 도 일원	53,041 (171)	-	53,041 (171)	경북고시 제01-288호	

주 : ()는 사업구역내 시설면적임

1-2-3. 공공·문화체육시설

1-2-3-1. 공공청사

①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769	-	1,769	-	
기정	청1	공공청사	-	초곡리 산36묘 일원	891	-	891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청2	공공청사	-	초곡리 산36묘 일원	878	-	878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1-2-3-2. 학교시설

①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57,000	-	57,000	-	
기정	초1	학교	초등학교	초곡리 산33-3목 일원	13,000	-	13,000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초2	학교	초등학교	초곡리 130-2답 일원	13,000	-	13,000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중	학교	중학교	초곡리 129답 일원	15,000	-	15,000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고	학교	고등학교	초곡리 산38-70임 일원	16,000	-	16,000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1-2-4. 방재시설

1-2-4-1. 우수지

① 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7,720	-	7,720	-	
기정	저1	우수지	저류시설	초곡리 35답 일원	4,781	-	4,781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기정	저2	우수지	저류시설	초곡리 11대 일원	2,939	-	2,939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1-2-4-2. 하천

①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3,787	-	3,787	-	
기정	하1	하천	소하천	초곡리 1006천 일원	3,787	-	3,787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1-3. 기반시설의 설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1,200)

: 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1-1.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191,104.0			
단1	2,356.1	본 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 인가후 이를 획지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함		
단2	2,657.5	"		
단3	3,060.5	"		
단4	3,216.1	"		
단5	3,140.5	"		
단6	2,516.9	"		
단7	6,503.7	"		
단8	5,389.9	"		
단9	2,698.7	"		
단10	4,553.4	"		
단11	4,162.1	"		
단12	2,922.1	"		
단13	4,138.4	"		
단14	3,738.9	"		
단15	2,689.3	"		
단16	2,152.5	"		
단17	1,760.7	"		
단18	3,056.1	"		
단19	4,433.7	"		
단20	4,439.1	"		
단21	2,931.1	"		
단22	4,439.1	"		
단23	3,787.6	"		
단24	3,367.3	"		
단25	2,611.6	"		
단26	4,066.7	"		
단27	4,072.1	"		
단28	4,072.1	"		
단29	2,959.1	"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단30	2,261.1	본 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 인가후 이를 획지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함		
단31	3,445.5	"		
단32	2,345.8	"		
단33	3,125.7	"		
단34	2,647.3	"		
단35	2,410.8	"		
단36	3,835.4	"		
단37	2,737.5	"		
단38	2,960.4	"		
단39	2,960.2	"		
단40	2,677.7	"		
단41	2,794.9	"		
단42	2,616.3	"		
단43	3,951.5	"		
단44	4,547.4	"		
단45	1,519.6	"		
단46	1,826.5	"		
단47	1,098.6	"		
단48	1,903.3	"		
단49	1,903.3	"		
단50	1,903.3	"		
단51	2,168.3	"		
단52	2,705.1	"		
단53	2,464.4	"		
단54	3,723.6	"		
단55	1,408.3	"		
단56	1,789.4	"		
단57	2,782.4	"		
단58	4,158.6	"		
단59	2,706.6	"		
단60	4,032.8	"		
단61	2,592.1	"		
단62	1,976.1	"		
단63	858.2	"		
단64	373.1	"		

2-1-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296,312			
공1	60,813	본 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 인가후 이를 획지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함		
공2	80,782	"		
공3	62,750	"		
공4	63,273	"		
공5	28,694	"		

2-1-3. 준주거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29,592			
준1	2,272	본 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 인가후 이를 획지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함		
준2	3,083	"		
준3	4,858	"		
준4	4,875	"		
준5	4,875	"		
준6	4,876	"		
준7	4,753	"		

2-1-4. 주차장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5,836		5,836	
주1	1,663	초곡리 산38-11 임 일원	1,663	
주2	2,591	초곡리 산38-62 임 일원	2,591	
주3	1,582	초곡리 산38-40 임 일원	1,582	

2-1-5. 학교시설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57,000		57,000	
초1	13,000	초곡리 산33-3목 일원	13,000	초등학교
초2	13,000	초곡리 130-2답 일원	13,000	초등학교
중	15,000	초곡리 129답 일원	15,000	중학교
고	16,000	초곡리 산38-70임 일원	16,000	고등학교

2-1-6. 공공청사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1,769		1,769	
청1	891	초곡리 산36묘 일원	891	
청2	878	초곡리 산36묘 일원	878	

2-1-7. 저류지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7,720		7,720	
저1	4,781	초곡리 35답 일원	4,781	
저2	2,939	초곡리 11대 일원	2,939	

2-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2-1.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1 ~ 단64	단독 주택 용지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정 및 군사시설, 공장, 발전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층 수	최고층수	• 4층 이하
			최저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2-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1 ~ 공5	공동 주택 용지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정 및 군사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층 수	최고층수	• 25층 이하
			최저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 높이 및 배치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 참조

2-2-3. 준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준1 ~ 준7	준주거 용지	용 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중 아파트, 안마시술소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층 수	최고층수	• 7층 이하
			최저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2-4. 학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초1, 초2 중, 고	학교 용지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층 수	최고층수	• 5층 이하
			최저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2-5.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청1 청2	공공 청사 용지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공공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층 수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2-6.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주2 주3	주차장 용지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적률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층 수	최고층수	7층 이하
			최저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2-7. 저류지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저1 저2	저류지 용지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원,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층 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최저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1,200)

: 게재생략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3-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3-1-1. 차량출입불허구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진출입이 불가하며, 이외의 지역에서 차량진출입 가능 	세부사항 도면 참조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서 참조

공 고

포항시의회공고 제5호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포항시의회 회
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76회 포
항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1년 6월 20일(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1년 6월 9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상 구